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

- 1. 관련 :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-736 (2021.4.29.)
- 2. 대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연1회, 1시간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※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급 학교의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여야함
- 3. 이와 관련하여,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주요변동사항과 사업안내용 리플렛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 - 가. 주요 변동사항
 - (실적점검)
 - (실적배점표 도입) 교육 계획 수립, 교육 참여율,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점수 차등
 - (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)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, 언론공표 등
 - (교육 위탁기관 지정) 2021년 7월 이후
 - 나. 문의 :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(1522-0495)
- 붙임 1.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.
 - 2.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리플렛. 끝.
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

장애학생진로 전결 2021.4.30.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현창 조영석 평생교육팀장 **차영아**

협조자

접수 시행 특수교육정책과-2573 (2021.5.3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/ 대국민 공개 전화번호 044-203-6772 팩스번호 044-203-6687 /jhc2142@korea.kr